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56
----------	------

2021년 2월 2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2월 4일, 송명화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년 2월 9일

다. 상정일자: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2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송명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20년 7월, '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'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이 전략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'탄소중립'이라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4조제4항).
-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'2050년 탄소중립'으로 설정함(안 제3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‘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’의 최종 목표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올해 1월, ‘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’의 세부 계획인 ‘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, 이 계획의 최종 목표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, 즉, 온실가스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음.



〈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의 최종 목표〉

-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의 대전제이자 최종목표인 '2050년 탄소중립'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,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,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탄소중립”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‘0’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”을 “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“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4. "기후변화 취약성"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.</p> <p>5. "승용차마일리지"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 <p>6. "에코마일리지 제도"란 전기, 수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온실가스 감축목표) ① (생략)</p> <p>② 시는 <u>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</u></p> <p>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·수당·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"탄소중립"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'0'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5.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온실가스 감축목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— <u>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-----.</u></p> <p>제14조(수당 등) ----- ----- 범위에서 ----- -----.</p>